2018학년도 기숙사(생활관) 생활 규칙

제 1장 총칙

제1조 (목적) 본 기숙사는 '나를 사랑하고 더불어 행복한 민주시민을 교육한다.'는 학교 교육목표 하에 '건전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자기주도적 역량을 신장'하는데 목적을 둔다.

제2조 (운영방침) 다음과 같은 운영방침을 둔다.

- 1.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함양을 위해 기숙사 운영 및 규칙제정에 있어서 학생들이 자율적·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의견을 존중하도록 한다.
- 2.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, 행동, 표현이 다른 점을 인식하고,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온몸으로 체득하며 다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 합의된 규칙을 준수하고 타인을 배려함으로써 안전하고 편 안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도록 한다.
- 3. 기숙사를 학교의 연장선상에 있는 교육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고 이에 따라 규칙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건전한 기본 생활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을 돕도록 한다.
- 제3조 (입사) 본교 학생은 기숙사에서 3년간 의무적으로 생활하며, 기숙사 운영규칙을 준수 할 의무를 가진다.
- 1. 위 조항은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대상으로 하며,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
제2장 운영조직

- 제4조 (조직) 기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숙사 운영 위원회와 기숙사 학생자치회를 조직·운영한다.
- 제5조 (기숙사 운영 위원회) 기숙사 운영 위원회는 고산고등학교 기숙사 운영규정 제 10조 ~ 제15조를 따른다.
- 제6조 (기숙사 학생자치회) 기숙사 학생자치회는 고산고등학교 기숙사 운영규정 제 16조 ~ 제21조를 따르며, 본 규정 제 6조 ~ 제 11조와 같다.
- 1. 고산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을 위하여 기숙 사학생자치회(이하 "자치회"라 한다.)를 둔다.

제7조 (회원의 자격) 회원은 고산고등학교 기숙사 입사 중인 학생으로 한다.

제8조 (자치회 구성 및 임무) 자치회 구성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자치회 임원: 회장, 부회장, 학년 대표, 호실장 등으로 구성
- 2. 임원의 임무
 - 가. 회장 : 자치회 총괄, 자율과 질서를 존중하는 기숙사 생활을 위한 각종 안건 협의 및 건의
 - 나. 부회장: 자치회장 보좌. 회장이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시 회장의 임무 대행
 - 다. 회장과 부회장은 각각 다른 성별로 하며 각각 남자대표, 여자대표를 겸한다.
 - 라. 학년대표: 각 학년 별로 남자대표·여자대표를 두며, 기숙사 내 질서유지를 위한 생활교육 임무를 담당한다.
 - 마. 호실장: 각 호실을 대표, 실을 관리하고 건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전달한다.
 - 바.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2018학년도 1학기는 임시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남자 대표 2명, 여자 대표 2명으로 대신한다.

제9조 (임원 선출 및 임기) 임원 선출 및 임기는 각 호와 같으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.

- 1. 임원: 자치회에서 학기 초에 선출
 - 가. 호실장은 각 호실에서 선출
- 2. 회장, 부회장, 학년대표에게는 학교장이 당선증 수여
- 3. 임기: 1년
- 4. 임원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하며,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함.
- 5.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2018학년도에는 대표의 임기를 6개월로 한다.
- 제10조 (심의사항) 자치회는 원활한 입사생활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하며 다음 각호에 대하여 심의한다. 단, 기숙사 운영규정의 내용에 어긋나는 조항은 재논의 한다.
 - 1. 자치회 회칙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 - 2. 기숙사 생활 수칙 등에 관한 사항
 - 3. 학생의 건의에 관한 사항
 - 4. 그밖에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

제11조 (회의) 기숙사 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 학생들이 회의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한다.

- 1. 정기회의는 매주 목요일 실시하며,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시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- 2. 임시회의의 경우 자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개최 일정 및 사안을 기숙사 운영부 장 및 사감과 협의한다.
- 3. 자치회 결정사항은 기숙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한다.

제3장 기숙사 생활

- 제12조 (입사) 본교 학생은 전원 기숙사에 입사하여야 하며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기숙사용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.
- 1. 위의 사항은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대상으로 하며.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
제13조 (입사제한 및 재입사) ① 입사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전염병 질환 및 보균학생
- 2. 다른 학생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
- 3. 평소 음주 또는 약물 오남용이 있는 학생
- ② 재입사: 퇴사 사유가 소멸된 학생이거나 위원회에서 재입사를 결정한 학생

제14조 (준비물) 기숙사에 입사할 때는 기본적 개인 준비물을 준비할 의무를 가진다.

- 1. 체육복, 내의류, 양말, 침구류(요, 이불), 옷걸이, 세면도구(치약, 칫솔, 비누, 샴푸, 수건 등), 기타 물품(바늘, 실 등 개인에게 필요한 용품)을 준비한다.
- 2. 학용품 및 학습도구를 준비한다.

제15조 (금지물품) 기숙사에 입사할 때는 금지된 물품을 소지해서는 안 되며, 발견 시 압수한다.

- 1. 인화성 물질(담배, 라이터, 가스)
- 2. 주류 및 마약성 약물
- 3. 흉기 및 위험한 물질로 인정되는 것
- 4. 기타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품이나 애완동물 등
- 5. 입사생의 금지소지품

내 용

- ▶인화성 물질 및 화재위험이 있는 전열기(냉난방 열기구, 전기히터, 버너, 포트, 성냥, 라이터, 다리미 등) 단, 드라이기나 고데기의 경우 코드를 뽑지 않을 시 일주일간 압수한다.
- ▶ 흉기(칼 등) 및 위험한 물질로 인정되는 것
- ▶고가품 및 필요 이상의 많은 용돈
- ▶기타학생의 신분으로 소지해서 안 될 물건으로 판단되는 것
- 19금 출판물 및 성인용품
- 화투, 카드, 바둑, 장기, 각종 보드게임 및 비디오게임, 노트북 등의 오락 기구 는 밤11시 이후 사용할 수 없다. 사용시 압수한다.
- 라면과 탄산음료는 반입이 금지된다.

제16조 (호실 배정)기숙사 담당교사가 학생대표와 협의하여 배정한다.

- 1. 남학생과 여학생은 다른 층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2. 다른 학년은 다른 호실에 배정한다.

- 3. 학기별 1회 호실을 바꾼다.
- 4. 임의로 방을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.
- 제17조 (외출 및 외박) 부득이하게 외출 및 외박 사유가 발생 시 외출·외박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제출하도록 한다. 이 경우 부모님이 담임교사에게 미리 요청하여 상의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한다.
- 1. 외출은 21:00까지 생활관에 입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할 경우, 기숙사 사 감에게 사전에 연락을 하여 허락을 받도록 한다.
- 2. 외출 및 외박 시에는 외출·외박증을 소지하도록 한다.
- 3. 외출 및 외박 후 바로 사감을 찾아가서 무사히 입실 했다는 확인을 받도록 한다.

제18조 (통학)

1.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숙사 생활이 어려울 경우 학부모요청에 의해 '통학 사유 서'를 제출하고 학교장 결재를 득한 후 통학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 19조 (인원점검)

- 1. 기숙사생은 다음 각 시간별, 장소별로 인원점검에 참여해야 한다.
 - 가. 19:10 요일별 활동 장소(요일별 담당 교사), 교외 활동의 경우 담당 강사 의 출결확인으로 대체
 - 나. 23:00 생활관(기숙사 사감)
 - 다. 07:20 ~ 07:40 급식실(기숙사 사감)

제20조 (기숙사 개방)

- 1. 기숙사생은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오전 08:20 퇴실을 원칙으로 한다.
- 2. 기숙사 생활관은 18:10부터 다음날 아침 08:20까지 개방하며 당일 퇴실 시까지 예정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이외의 시간에 출입을 금한다. 단, 학사일정이나 천재지변 등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- 3. 월요일 오전은 08:30에서 09:20까지 개방한다.

제21조 (기숙사) 생활 일과표

시간	내 용
07:00 - 07:20	일어나기 / 침구정리 / 아침운동 / 세면 / 등교준비
07:20 - 08:20	아침식사, 기숙사 퇴실(문 닫기)
08:00 - 08:30	교실 입실
08:30 - 16:30	학교 일과
16:30 - 18:10	방과후 수업, 자율동아리
18:10 - 19:10	저녁식사
19:10 - 21:00	자율동아리
21:00 - 23:00	인원파악 및 점검, 세면 및 샤워, 개인시간, 기숙사 청소 및 정 리
23:00 - 07:00	취침 및 소등

*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.

제22조 (기숙사 생활) 기숙사 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1. 기숙사 생활공간은 2층은 남학생, 3층은 여학생이 사용하며 어떤 경우에도 상호간의 출입을 금지한다.
- 2. 음주, 흡연, 취사, 절도, 무단외출 및 무단외박 등 불건전한 행위를 했을 때는 기숙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공동체회의에서 결정한 책임을 진다.
- 3. 기숙사는 다함께 사용하는 공간임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. (고성, 욕설, 음악소리, 나체차림, 뛰는 행위 등)
- 4. 도난을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과 휴식을 보호하기 위해 타 호실로의 이동을 금지한다.
- 5. 기숙사 내부의 공용물품(침대, 책상, 옷장 등)을 임의로 이동해서는 안 되며 파손 시 같은 제품으로 변상한다.
- 6. 배달음식은 21시부터 22시까지 가사실에서 한해 허용한다. 이 조항은 2019년 1월 17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.
- 7. 기숙사 입사 학생은 지도교사 및 사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며 기숙사 생활규정을 숙지하여 기숙사 질서 확립에 노력한다.
- 8. 기숙사 입사학생은 고산고등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고산고등학교의 교육목표 와 이념에 맞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야 한다.

- 9. 기타 기숙사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기숙사 위원회의 심의와 공동 체 회의의 결정에 따른다.
- 10. 기숙사 규정에 대한 개정은 기숙사자치회의 결정에 따라 정한다.

제23조

- 1. 실내흡연, 실내음주는 학교 생활규정에 준하여 처벌한다.
- 2. 실내취사, 남녀 간 기숙사 무단출입, 일과 중 기숙사 무단출입을 하였을 경우 학교에서 정하는 특별교육을 15일간 받도록 한다.
- 3. 기숙사 내에서 라면이나 탄산음료를 섭취하였을 경우 특별교육을 3일간 받도록 한다.
- 4. 다음의 기숙사 규칙들을 위반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누적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조치한다.
 - 가.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본 규정 제 19조에 명시된 대로 인원점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
 - 나.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08:20까지 퇴실을 하지 않는 경우
 - 다. 본 규정 제21조의 취침시간 이후 취침방해 행동을 하는 경우
 - 라. 그 외 본 규정에 명시된 정당한 사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

경고 누적 회수	조치
1회	경고
	첫 번째는 5일, 두 번째는 10일, 세 번째는
7회	15일간 학교에서 정하는 특별교육을 받도록
	한다.

- 3. 경고 누적횟수는 1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월에는 갱신된다.
- 이 규칙은 2018.12.12.부터 시행한다.